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2,461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87. 12. 4 법률 제399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과,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등으로 함(영 제 4 조의 2)
 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등록업자의 범위를 자본금 2억원이상·기술자격취득자 4인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호이상, 기타 지역은 50호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의 건설대상주택의 규모는 5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공사비가 당해 등록업자의 자본금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함(영 제10조의 2)
 다.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등에 건설하는 주택·다세대주택·독신자주택·시범주택 및 복합건축물인 주택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의 주택과는 다르게 별도의 건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0조의 2)
 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10세대이상인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대이상인 때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영 제32조 제 1항)
 마.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동면허없이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지의 사용·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34조의 2).
 바. 종전에는 1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인이상의 조합원만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 제 2 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과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제 5 조 제 6 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개인인 등록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건설업법 적용배제 기준)

①법 제 6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 4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 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2억원이상.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4억원이상으로 한다.
 2. 건축기사 1급 1인과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4인 이상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기타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 ②제 1 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 4 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5층이하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 이고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 (총공사비에서 대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가 자본금의
10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다.

③등록업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등록업자의 명칭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 및 영업정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제 5 항중 “건설업법 제 7 조의 4의
규정”을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지정의 취소) ①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의 2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주택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 독신자용주택 (23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등 공동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32조 제 1 항중 “10세대”를 각각
“20세대”로, “3만3천제곱미터이상”을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에 제 6 호의2 및 제 6 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5 항중
“구분하여 순차로”를 “구분하여”로 하고,
동조 제 6 항중 “단지”를 “대지”로 한다.
6 의 2. 제10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 의 3 . 제34조의 2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 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2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제 3 항 및 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3 항 (종전의 제 2 항) 중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3 을 삭제한다.

제34조의 2를 제34조의 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 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 4 및 법 제44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 2 제 1 항 각호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자로부터 당해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가 대지의 사용·처분,
사업비부담, 사업수익의 배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말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
자재생산업자의 명칭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 주택자재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의 사유와 영업정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 2중 “도지사”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검사상품명
4. 검사시설 및 장비
5. 검사능력

제4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판매금지 주택자재명등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이 금지되었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의 명칭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주택자재명 및 주택자재의 수량과 금지 또는 폐기등의 사유와 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금지 또는 폐기등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인 때에는 기존주택이 제4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2항 중 “10인이상의”를 “20인이상의”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동일한 국가기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제42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존주택이 제4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 2 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의 2 제목 “(조립식주택부재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조립식주택부재 (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고자”로, “조립식주택부재성능 인정신청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부재의 성능”을 “우량주택자재”로,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를 “이를 인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부재의 성능을”을 “우량주택자재를”으로, “조립식주택부재 성능인정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서”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부재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인정”으로 한다.

제4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 3 (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중 “법 제48조 제2항”을 “법 제48조”로 하고,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등”으로 한다.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2 (청문의 결차) ①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재지 또는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 본문 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등록 및 등록말소”를 “등록·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로 하며, 동조 제7호 중 “법 제41조 “법 제41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 2”로, “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말소”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권한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1.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로부터의 주택건설 실적의 접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1. 지정기준의 표와 동표밑의 가을 각각 *과 같이 한다.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공사업 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자에 한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축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민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

구 분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자 본 금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기 술 능 力	1. 건축분야기술자 4 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6. 건축사 : 1인이상	1.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 1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에 한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주 택 건 설 실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이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 이상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동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3]의 [부표] 중 매입대상란의

제1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중 “요정”을 “일반유홍음식점 (간이주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무도유홍음식점

[별표3]의 [부표] 중 제6호 제29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500,000
나. 2종면허	100,000
다. 3종면허	50,000
29.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31. 주택관리인 면허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별표4]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지하층의 높이는 2.7 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높이를 2.1 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4] 제2호 나목중 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제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를 “세대당 0.6제곱미터이하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 (“이하 시·군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0.4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그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제곱미터)의 비율로,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마다 1.1제곱미터 (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안에 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6]의 제5호가목중

“전기통신법시행령 제43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로 한다.

[별표7]의 벽돌의 품명란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하고, 동란에 “경량벽돌”을 신설하며, 블록의 품명란중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하고, 동란에 “경량블록”을 신설하며, 기와의 품명란중 “시멘트기와”를 “보통시멘트기와”로, “스레트기와”를 “가압시멘트판기와”로 한다.

[별표8]의 업종별란의 제1호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시멘트기와”를 “보통시멘트기와”로 하며, 동란의 제8호중 “스레트기와제품”을 “가압시멘트판기와제품”으로 하고, 동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량제품(경량 벽돌, 경량블록) 생산업	1. 배합시설 2. 혼합시설 3. 양생시설 4. 기타 건설부령 이 정하는 시설
-----------------------------	---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 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